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7년 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 출산·양육 지원 등에 따른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여 출산·양육 지원과 관련한 민원 불편을 해소 및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 재정의(안 제2조)
- 출산양육지원금에 출산기념품 포함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의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4조)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내용 명확히 함(안 제5조)

○ 신청 및 지급절차를 변경(안 제6조)

○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마련(안 별지 제1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규제심사 : 해당없음〔기획감사실-2653('17. 3.20.)〕

라.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주민복지과-19709('17. 3.31.)]

마. 입법예고 : 의견없음[예고기간 : '17. 4.27.~ '17. 5.17.]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자”를 “아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출산양육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을 ““출산양육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으로, “현금을 말하며 첫 임신, 첫째, 둘째, 셋째, 넷째아 이상 출산”을 “현금 등을 말하며 출산기념품, 첫 임신·출산·첫 돌맞이”로, “양육비, 첫돌 축하금”을 “양육 지원금 등”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신청일을”을 “영아의 출생신고 주소를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하고, 신청일”로, “실제 거주하는”을 “있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성주아기보험은 제1항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지원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영아의 형제, 자매는 모두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만 19세 이상의 형제, 자매가 학업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을 군으로 둘 수 없는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등 사유서를 별도로 첨부하여야 한다.

④ 재혼 가정의 경우 각각의 자녀를 합산하며, 이 경우 주민등록이 군으로 되어 있는 보호자와 동일한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제4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영아가 미혼부·미혼모로부터 출생하거나 부모가 사망, 이혼하여 영아와 함께 부모 모두가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위와 같은 사유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양육하는 경우(12개월 미만의 입양아도 포함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되며,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2. 부 또는 모가 직장, 그 밖에 생계의 사유로 부모 모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둘 수 없는 경우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른 지원은 지원 대상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하였거나, 해당 영아가 사망한 경우 전출일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제5조의 제목 “(지원금액)”을 “(지원금액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극복의 원활한 시책추진”을 “극복”으로, “범위 안에서 다음과”를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출산기념품: 10만원 범위 내(출생아 1인당 1회에 한한다)
2. 첫 임신 축하금: 10만원(1회에 한한다)
3. 출산 축하금: 30만원(출생아 1인당 1회에 한한다)
4. 영아 양육 지원금
 가. 첫째 자녀: 매월 10만원씩 12회
 나. 둘째 자녀: 매월 20만원씩 12회
 다. 셋째 자녀: 매월 50만원씩 12회
 라. 넷째 자녀 이상: 매월 70만원씩 12회
5. 첫 돌맞이 축하금: 20만원(출생아 1인당 1회에 한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성주아기보험 :”을 “성주아기보험은”으로, “지원”을 “가입을 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원금의 신청은 영아의 부 또는 모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읍·면 사무소 및 보건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1부
2. 제4조제5항에 따른 지원대상
 가. 부모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나. 부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다. 직장 및 생계 등의 사유인 경우: 재직증명서 등 입증서류
 라.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소지 이장 확인서
 마. 그 밖에 성주군에 주소를 둘 수 없는 경우: 사유서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예금통장 사본 1부

② 읍·면장은 출생아의 출생신고 시 민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첫 돌맞이 축하금의 경우는 양육지원금을 지원 받은 자로서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당월 등록된 임부”를 “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을 비치·배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호 서식부터 제9호 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 시 별도안내

신청인 (대리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출산자와의 관계		휴대전화	
							집전화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출산자 (산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집전화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 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세대주와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
가족 사항	본인			[] 예 [] 아니오	
	배우자			[] 예 [] 아니오	
	자			[] 예 [] 아니오	
	자			[] 예 [] 아니오	
	자			[] 예 [] 아니오	

지방 자치 단체 서비스	출산 양육금 지원	□ 첫째 자녀(이름 :) □ 둘째 자녀(이름 :) □ 셋째 자녀(이름 :) □ 넷째 자녀 이상(이름 :) □ 첫임신축하금 □ 출산축하금 □ 첫돌맞이축하금(양육지원금 받는 경우) □ 성주아기보험 가입지원 □ 출산축하용품 □ 출산육아용품 대여 □ 영유아건강교실 □ 영유아 영양제 지원 ※ 둘째 자녀이상 신청 시 자녀 모두 관내 거주 ※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거주 시 신청 가능(소급적용 가능) ※ 부 또는 모가 관내 미거주시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실거주확인서등 추가제출

	서비스명	출생자 성명	신청 사항
전국 공통 서비스	양육수당	※ 출생자 모두 기재	[] 가정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해산급여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전기료 경감		[] 출산가구 [] 다자녀(3명 이상) 고객명 : 고객번호 :
	다자녀(3명이상) 도시가스료 경감		[] 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다자녀(3명이상) 지역난방비 경감		[]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 고객명 : 고객번호 :

급여 계좌	성 명	출산자와의 관계	대상서비스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참고사항 등

※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결과 통지 방법	[] 문자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

※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부 또는 모가 관내 미거주시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실거주확인서등 추가제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 장애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참고사항	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유 의 사 항 , 행 정 정 보 공 동 이 용 및 개 인 정 보 이 용 · 제 공 동 의 서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3.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5.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목	이용 목적	보유기간
해산급여 대상여부	저소득층해산급여 대상자 자격 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장애인 여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자 자격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6.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다자녀가구 또는 출산가구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기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3년, 제공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고객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7. 전기료, 지역난방비, 도시가스료는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별로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연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8.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등록, 심사, 자격 확인	→	선정통지 및 서비스제공
신청인 (대리신청인)		읍·면·동		시·군·구, 보건소,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난방공사 등		시·군·구, 보건소,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난방공사 등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 (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 아이-----.
3."출산양육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출산 장려와 신생아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의 현금을 말하며 첫 임신, 첫째, 둘째, 셋째, 넷째아 이상 출산 축하금 및 양육비, 첫돌 축하금을 포함한다.	3. "출산양육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이란 ---------- 현금 등을 말하며 출산기념품, 첫 임신・출산・첫 돌맞이 ------- 양육 지원금 등----------.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제4조 (지원대상) ① 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제4조 (지원대상) ① ---------- 영아의 출생신고 주소를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하고, 신청일 -- 있는 ----------.
② 성주아기보험 지원대상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군에 등록된 임부 및 당해연도 그 임부가 출산한 신생아 및 영유아로 한다.	② 성주아기보험은 제1항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지원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 할 수 있다. 1. 미혼부, 미혼모로부터 출생하거나 신생아의 부모가 사망, 이혼의 사유로신생아와 함께 부모 모두가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및 위와 같은 사유로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두고 양육하는 경우(입양아도 포함) 2. 부 또는 모가 직장, 기타 생계의 사유로 부모 모두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다만, 위의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등 사유서를 별도로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영아의 형제, 자매는 모두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만 19세 이상의 형제, 자매가 학업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을 군으로 둘 수 없는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등 사유서를 별도로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은 지원대상자가 타 시·군·구로 전출할 경우 지원을 중단한다.	④ 재혼 가정의 경우 각각의 자녀를 합산하며, 이 경우 주민등록이 군으로 되어 있는 보호자와 동일한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 할 수 있다. 1. 영아가 미혼부·미혼모로부터 출생하거나 부모가 사망, 이혼하여 영아와 함께 부모 모두가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위와 같은 사유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양육하는 경우(12개월 미만의 입양아도 포함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되며,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2. 부 또는 모가 직장, 그 밖에 생계의 사유로 부모 모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둘 수 없는 경우
<신 설>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른 지원은 지원대상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하였거나, 해당 영아가 사망한 경우 전출일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제5조 (지원금액)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증가 및 저출산 극복의 원활한 시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쌍태아 이상일 경우 출산 순위에 따라 각각 차등 지원한다.	제5조 (지원금액 등) ① ---------- ---------- 극복---------- ----------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 ---------- ----------.
<신 설>	1. 출산기념품: 10만원 범위 내(출생아 1인당 1회에 한한다)

<신 설>	2. 첫 임신 축하금: 10만원(1회에 한한다)
<신 설>	3. 출산 축하금: 30만원(출생아 1인당 1회에 한한다)
<신 설>	4. 영아 양육 지원금 가. 첫째 자녀: 매월 10만원씩 12회 나. 둘째 자녀: 매월 20만원씩 12회 다. 셋째 자녀: 매월 50만원씩 12회 라. 넷째 자녀 이상: 매월 70만원씩 12회
<신 설>	5. 첫 돌맞이 축하금: 20만원(출생아 1인당 1회에 한한다)
② 자녀수에 관계없이 군에 등록된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출산기념품을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③ 지원금은 다음 각호에 의거 출생생존 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1. 첫 임신 축하금 : 10만원 1회 지원 2. 출산 축하금 : 자녀수에 관계없이 30만원 1회 지원 3. 영아 양육 지원금- 첫째아 : 월10만원 1년간 지원- 둘째아 : 월20만원 1년간 지원- 셋째아 : 월50만원 1년간 지원- 넷째아 이상 : 월70만원 1년간 지원 4. 첫 돌맞이 축하금 : 20만원 1회 지원	<삭 제>
④ 성주아기보험 : 매월 1인당 30,000원 이내로 3년간 지원할 수 있다.	④ 성주아기보험은 ---------- 가입을 지원--.
⑤ 기타 다자녀 가정 우대를 위해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

제6조 (신청 및 지급절차) ① 지원금의 신청인은 영아의 부 또는 모가 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의 경우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 이 경우에도 보호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제6조 (신청 및 지급절차) ① 지원금의 신청은 영아의 부 또는 모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읍·면사무소 및 보건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1부 2. 제4조제5항에 따른 지원대상 가. 부모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나. 부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다. 직장 및 생계 등의 사유인 경우: 재직증명서 등 입증서류 라.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소지 이장 확인서 마. 그 밖에 성주군에 주소를 둘 수 없는 경우: 사유서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예금통장 사본 1부
② 신청인이 출생아의 출생신고 시 읍·면장은 민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토록 한 후 출생신고서와 동일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출생아의 출생신고 시 민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첫 돌맞이 축하금의 경우는 양육지원금을 지원 받은 자로서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성주아기보험 가입지원에 있어서 당월 등록된 임부의 명단을 익월 10일까지 보험사에 통보하고, 보험계약이 확정된 후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 대상자 ----------. <종전의 제3항>

④ 지원금 신청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지원금 신청서 1부 2. 지원대상 제4조제3항의 경우 가. 사망 또는 이혼의 경우 호(제)적 등본(본적이 타시군인 경우에 한한다.) 나. 직업상의 이유인 경우 재직증명 등 입증서류 다. 사실 거주인의 경우 주소지 이장 확인서 첨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예금통장 사본 1부 5. 임신 사실 확인서(진단서, 보건(지)소 등록번호) 단, 첫 임신 축하금 지원자에 한함	<삭 제>
⑤ 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삭 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지원대상 가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원신청서의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삭 제>
⑧ 군수는 신청자가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임부등록여부 2. 기타 지원대상 여부	<삭 제>
⑨ 읍·면사무소 및 군에서 신청서를 교부받은 신청인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	<삭 제>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제12조 (대장 등 비치)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1호 내지 별지 제4호의 서식을 비치·배부하며, 지원금 접수대장 및 지급대장인 별지 제5호 내지 별지 제9호 서식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대장 등 비치)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을 비치·배부하여야 한다.